

# 시해 돼지고기 가격제도 어떻게 변하나?



김 경 남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

## 1. 돼지고기의 중요성과 가격제도

모든 상품의 거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품질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돼지고기, 쇠고기의 경우는, 생축의 거래와 도매단계에서의 지육거래는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반하여 소매단계에서는 고시가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의 육류는 우리 국민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원으로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과 체위향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식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그 영양가

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고 우리 기호에도 알맞아 국민들로 부터 널리 사랑을 받고 있으며, '90년 9월말 현재 13만2천호의 농가에서 약 4백56만6천여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으나, 사육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는 계속 신장되는 여건에서 가격 등락이 심하고,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간 정부에서 가격을 시·도를 통해 직접 관리해 왔으나, 주로 물가안정 측면에서 가격을 억제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80년 이후 돼지고기 가격제도의 변경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81~'85년간 자율가격 표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사실상의 행정지도가격으로 통제되어 왔다.

## 2. 돼지고기 가격 자율화 배경

'85년 4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현행 연동가격제도는 산

| 구 분            | 가 격 제 도                    | 제도전환사유                   |
|----------------|----------------------------|--------------------------|
| '83.3 이전       | 행정지도 가격제                   |                          |
| '80.4~'81.4    | 연동가격제                      | 산지값 상승에 따른 가격통제          |
| '81.5~'85.4    | 자율가격 표시제<br>(사실상 행정지도 가격제) | 수입쇠고기 둔갑방지 및<br>가격단속의 한계 |
| '85.5~'90.12현재 | 연동가격제                      | 산지값 하락에 따른 소비확대<br>유도    |

지 및 도매시장 가격에 유통비용, 식육판매업소 이윤 등을 감안, 적정 소비자가격을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함으로써 돼지가 과잉생산되거나 비수기 소비둔화로 산지가격이 하락할 때는 소비자가격을 산지가격에 맞춰 인하하여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했다. 또 공급부족으로 산지가격이 높을 때는 소비자가격도 상향조정, 소비를 억제시켜 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점과 불합리성을 들어 양축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및 일선행정기관에서 이의 개선을 건의하여 왔으며, 그 예로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동가격 변경의 경직성이다. 시·도지사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변경하여 고시하기 위해서는 연동가격 고시때 적용한 가격에 비해 산지 및 도매시장 거래시세가 10일간 평균가격이 3% 이상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이 시·도별로 다른 점이다.

연동가격 변경시 산정기준이 되는 산지 및 도매시장가격 적용의 기준과 방법이 도매시장 유무와 지방육 반입 정도에 따라 시·도별로 달리 적용되



〈표1〉 시·도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적용시도                              |
|-------------------|-----------------------------------|
| 산지가격              | 경기, 강원, 충·남북<br>전·남북, 경·남북,<br>제주 |
| 도매시장<br>평균가격      | 대구, 인천                            |
| 산지 및 도매시장<br>평균가격 | 서울, 부산, 광주,<br>대전                 |

고 소비지에서의 유통비용 즉, 점포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전기, 수도, 광열비 등이 상이하하여 인접 시·도간에 산지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도 소비자가격은 차이가 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셋째, 산지 및 도매시장가격

이 변동되어 연동가격을 변경할 요인이 발생하여도 시·도에서는 물가문제나 타지역과의 연동가격 균형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산지 및 도매시장 시세가 급변할 때에는 가격변경 절차와 소비자에 대한 3일 이상의 시행예고를 위한 시차때문에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소매단계에서 연동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 육류유통의 근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표2〉 돼지고기 연동가격과 실거래 가격

(90.12. 5현재)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충북    | 전남    | 경북    |
|-------|--------------|-------|-------|-------|-------|-------|-------|-------|
| 연동가격  | 2,100원/500kg | 2,100 | 2,100 | 2,200 | 2,050 | 2,150 | 2,100 | 2,100 |
| 실거래가격 | 2,300        | 2,350 | 2,600 | 2,400 | 2,200 | 2,200 | 2,100 | 2,200 |

하였다.

### 3.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자율화에 따른 대책

최근들어 국민소득 증가와 레저 인구의 증가로 육류소비 가 급증하여 돼지고기 소비의 경우 지난 80년 이후 거의 2배에 달하였고 소비형태도 점차 고급화, 다양화 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함과 아울러 당면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행과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가격체계의로의 전환필요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연동가격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91년 1월부터 쇠고기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자율화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새로운 돼지가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방법 및 식육판매업소에서의 표시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여 90년 12월 10일 고시한 바 있다.

돼지고기 지육을 안심, 등심, 목심,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 갈비를 기술적으로 분할 정형하는 방법과 분할 정형된 부위육을 진열하고 판매업소 스스

로 받고자 하는 가격, 용도 및 부위명을 표지판에 적어 진열대에 놓아 소비자가 고기와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용도에 맞도록 선택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판매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적정 소비자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표3〉 돼지고기 부위표시 방법

| 부위명 | 표시 방법      |
|-----|------------|
| 안심  | 안심 또는 특등육  |
| 등심  | 등심 또는 상등육  |
| 목심  | 목심 또는 상등육  |
| 삼겹살 | 삼겹살 또는 상등육 |
| 앞다리 | 앞다리 또는 중등육 |
| 뒷다리 | 뒷다리 또는 중등육 |
| 갈비  | 갈비         |

나. 축산업협동조합(업종조합포함)으로 하여금 소비자에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직접 운영토록 하여 가격자율화 이후 육류판매 시범업소로 육성, 일반 식육판매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90년도에 20개소를 개설·준비중에 있으며, '93년까지는 100개소로 점차 확대·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다. 부정축산물 유통근절과 신선육 유통을 위해 산지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의 관외 반출규정을 강화하여 도축전 일정시간 계류, 냉장육 출고, 식육운송차량 신고 등을 의무화하여 우선 쇠고기에 적용하고

점차 돼지고기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검사원을 현재 155명에서 312명으로 157명을 증원하는 한편, 수분함량 측정기준치와 측정방법을 '92년까지 연구,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라. 육류 소비자가격 자율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91년 하반기부터는 도체등급제를 실시하며,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비육상태, 고기의 조직감, 육색, 지방색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거래토록 하므로써 공정한 거래형성과 높은 등급육 생산을 위한 지표가 되어 가축개량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축산장기 발전대책의 일환인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가축시장을 산지 생축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편, 정비하는 한편, 양축농가의 가축거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축산물 공판장의 확대설치 및 도축장시설 근대화과 더불어 중부,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도 추진하여 생축유통에서 지육, 부분육 공급체제로 점차 전환할 방침이다. 